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된 식품유형, 검사항목 등을 반영하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4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 자료 첨부)하시어 우리 처(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3개 전부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 보건환경연구원(17개 시도), 2개 산하기관, 관련 협회

주무관 사무관 식품안전정책과전결 2020. 6. 24.  
장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616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www.mfds.go.kr](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6 팩스번호 043-719-2000 / [beliebt81@korea.kr](mailto:beliebt81@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